

보육시설의 위생설비에 대한 기준 비교

이 지 숙(군산대 교수)

우리나라의 유아 보육시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지침과 관리체계 등이 아직 미흡하다. 이에 오래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었고,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미국의 보육시설 규정을 조사하여,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시설 중 위생설비는 영유아의 기본적인 안전성과 관련이 깊다. 조사대상은 기후와 지형을 고려하여, 중북부와 동부, 서부,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에서 메트로폴리탄과 중소도시가 같이 소재하는 4개주를 선정하여, 위생설비의 안전성 및 쾌적성에 관련된 규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미국의 보육시설내 위생공간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에 넣어야 할 소변기, 대변기, 세면기 등의 개수와 사이즈, 재료와 운영방법, 온수 온도, 구비되어야 할 설비 등에 대하여 주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사용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

보육시설에 설치해야 할 변기나 수세기, 소변기의 수는 보육시설의 정원 숫자나 보호아동의 체류시간에 준하여 제시되어 있다. 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변기나 수세기는 주에 따라, 정원 15명 혹은 17 명당 1개의 변기와 수세기가 있어야 한다. 대개 소변기는 변기 2 개당 1 개를 설치해야 한다. 아픈 아동이나 위급시를 대비해서 변기와 수세기를 추가해야 한다.

위생기구의 사이즈는 반드시 아동용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이 혼자 이용하기에 너무 높다면, 아동의 손이 닿고,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논슬립 표면을 가진 고정된 계단이나 넓은 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육시설 내 기저귀 교체공간에 대한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다. 독립된 수세기가 있어야 하고, 그 주변에 비누, 단독 용도의 일회용 타월, 더운 바람의 핸드 드라이어 등이 있어야 한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저귀 교체공간의 디자인과 재료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목욕실은 난방이 되어야 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해야 하며,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보육실과 인접해야 한다.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하고,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과 변기공간의 잠금장치는 프라이버시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이 사용하는 온수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 섭씨 40도에서 최고 46도 혹은 49도 사이에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내 위생설비에 대한 미국 내 4개주의 결과를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정은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으며, 규정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약한 편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위생설비는 영유아의 보건위생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설비에 대한 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엄격하고 세밀하게 제시해야 하고, 규정을 따를 수 있게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